



본당/학교의 활동이나 행사에서 미성년자들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지침서 수령확인서

(2007년 8월-2010년 1월 27일 개정)

2010년 6월 8일 개정

본인은 로스엔젤레스 대교구 산하의 각 본당과 학교, 청년 사목 혹은 종교 교육 활동과 행사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활동하는 성인들을 위한 지침서를 수령하였으며, 그 지침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. 이 지침서에 기재된 바, “**미성년자와 함께 일하거나 자원 봉사하는 모든 성인들은 본당/학교 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‘안내서’ (예를 들어 천주교 학교 안내서, 본당 사목 안내서 등) 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규칙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.** 대교구에서 직원, 교사, 사목직, 유급직, 무급 자원봉사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성인들은 각각의 미성년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대표적 역할들입니다. 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유급또는 무급직이든 상관없이 본당/학교 내, 외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”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이 지침 내역들은 로스엔젤레스 대교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유지하고 우리의 보살핌안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들의 모범적 역할 을 제공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의 일환 입니다.

관여하고 있는 활동(들)이나 행사(들):

이름 (인쇄체로 알아보기 쉽게) :

서명 : _____

날짜 : _____

로스엔젤레스 대교구

각 본당이나 학교의 활동 또는 행사에서

미성년자들과 함께 하는 성인들을 위한 지침서

(2007년 8월 - 2010년 1월 27일 - 2010년 6월 8일 개정)

(2007년 8월의 미성년자들과 함께 하는 성인을 위한 지침서 6항 대체)

대교구 내의 직원, 교사, 혹은 유급/무급 사목/봉사자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성인들은 각 미성년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명을 받은 대표적 역할들이다. 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유급 직책이든 무급직책이든 상관없이 본당/학교 안 밖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공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. **다음의 지침 내역을 검토하고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후 본인이 지금 일하거나 자원 봉사하고 있는 본당 혹은 학교의 서류 보관함에 비치하여 두십시오.**
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미성년자들을 항상 옳바로 감독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, 보장해야 한다. 미성년자들은 성인이 아니고 독립적이지 못함으로 “제약이 따르는 개인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- 만약 미성년자들을 감독하는 직원/교사/봉사자들이 민법이나 본당/학교의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을 목격할 시 즉각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자신의 사목 지위로 인하여 상당한 개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. 그러므로 직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사목 관계를 유지한다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자신이 “친부모 역할”을 맡는 것을 피한다. 그런 관계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애착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.
- 어른과 미성년자 사이에 서로 매력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호작용에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. 그런 매력감이 과도하게 생긴다면 교구/학교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.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과 미성년자 사이에 연애관계 혹은 성관계는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,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과 미성년자의 연애 혹은 성관계는 불법이다.
- 미성년자와의 의사소통은 (예: 쪽지, 편지, 이메일, 인터넷 채팅, 전화통화 등) 공적인 직무상의 이유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- 성과 연관된 토의는 항상 교육적인 내용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 성적인 농담, 속어, 성적인 의미가 함축된 말들을 미성년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.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미성년자에 관한 비밀 정보나 미성년자가 말한 개인적인 성격의 비밀 내용들을 존중해 준다. 그러나 미성년자가 자신이나 남에게 위협이 될 만한 비밀 정보를 나누었다면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담당 주무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본당이나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을 감독하게 될 시에는 음주상태에서는 안 되고 21세 미만의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들에게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.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미성년자와 단 둘이 한 방에서 있게 되는 경우에는 문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충분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.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스포츠나 게임을 할 때는 다른 어른들이 함께 있거나,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.
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이 본당/학교의 행사를 미성년자와 함께 미성년자의 집에서 준비하려면 본당/학교 사무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. 또한,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각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인지하지 않는 한, 자신의 집에 어떤 미성년자도 오게 할 수 없다.
- 성직자/직원/교사/봉사자들은 본당/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이 아니면 미성년자를 차로 태워다 주거나 태워올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자 혼자만 태운 상태에서 운전 할 수 없다. 미성년자에게 차를 태워줄 때는 개인차를 교통 수단으로 명시한 부모 동의서가 요구된다. 개인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본당/학교 사무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.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가는 단체 여행시에는,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처럼 보일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숫자의 성인 보호자들과 충분한 숫자의 미성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.
- 미성년자의 사진을 출판할 때는 부모/법정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요구된다.
- 성인들이 미성년자/미성년자들과 단독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교구의 지문채취와 안전 환경 연수에 관한 정책을 수용한 이후에만 가능하다. 위의 요구사항을 안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직 단체 일원의 자격으로만 미성년자와 활동할 수 있다.